

의안번호	2206434
의 퇴 인	서영교 의원
회 답 일	2024. 2. 18.
추계번호	24A586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2조 제4항 (납부의 방법)	○ 정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납부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 등을 할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12조 제4항 (납부의 방법)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신용공여를 제공할 경우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납부대

행기관에 일정 기간의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금융결제원에 지불하는 건당 수수료 비용 또한 국가에서 부담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표 1] 국세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현황

구 분	내 용
수수료 총액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8%, 체크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0.5%
금융결제원 귀속분	건당 260원
금융결제원 귀속분 외	카드사 및 위탁은행에 귀속

- 다만 개정안은 신용카드등을 통한 국세납부시 납부대행기관 수수료의 면제 대상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로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수입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의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국세납부 실적 자료가 필요하나, 동 수입금액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출하기 어려움
 - 참고로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실적은 2023년 징수기준으로 20.4조원이며 납부대행기관 수수료율(0.8%) 적용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1,628억원으로 추정됨

[표 2] 국세 카드납부 실적 추이(2019~2023년)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국세 총 수납액(A)	3,097,600	3,201,687	3,720,468	4,201,474	3,938,367	5.4
－ 신용카드등 납부액 비중(B/A)	3.7	4.4	4.4	5.2	5.2	－
신용카드등 납부금액(B)	114,534	140,425	163,672	216,675	203,514	15.5
－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B*0.8%)	879	1,073	1,251	1,662	1,628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nabo.go.kr